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7.

발 의 자 : 이해민 · 김준형 · 강경숙
황운하 · 이학영 · 정춘생
서왕진 · 조인철 · 이정현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,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,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.

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21조의8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8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